

청렴실천규정

R-70-HF-04

Ver. 1.4

2024.04.01

주관부서: 윤리경영담당

개정 이력

Version	일 자	개정 내용	작성자	비 고
V 1.0	2021-07-07	청렴실천규정 신규 제정 (컴플라이언스 진단 개선사항 반영)	유영균	신 설
V 1.1	2021-11-08	규정 변경 (제 2 조, 제 11 조, 제 13 조)	정승민	
V 1.2	2022-08-25	규정 신설 및 변경 (신설 : 제 9~12 조, 변경 : 제 2 조, 제 7 조 등)	정승민	
V 1.3	2024-02-29	규정 일부 변경 (제 2 조 1 항, 제 7 조 1 항)	홍의수	개 정
V 1.4	2024-04-01	사명 변경	홍의수	

목 차

제 1 장 총칙.....	4
제 1 조 [목적].....	4
제 2 조 [용어의 정의].....	4
제 3 조 [적용범위].....	5
제 4 조 [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].....	6
제 5 조 [부정청탁의 금지].....	6
제 6 조 [금품등의 제공 금지].....	6
제 7 조 [금품등 제공의 허용범위].....	6
제 8 조 [개인적인 금품등 제공].....	7
제 9 조 [이권개입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].....	7
제 10 조 [자금세탁 금지].....	7
제 11 조 [급행료 금지].....	7
제 12 조 [제 3 자 관리].....	7
제 13 조 [신고 및 보고 의무].....	8
제 14 조 [규정 준수 관리].....	8
제 15 조 [징계 및 책임].....	8
제 16 조 [법령의 준용].....	8
부 칙.....	9
제 1 조 [시행일].....	9
제 2 조 [경과조치].....	9
제 3 조 [관련사규].....	9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[목적]

본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(주)(이하 '회사'라 한다) 임직원 모두가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용어의 정의]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직자 등”이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직자, 공적 업무 종사자 또는 관련 조직이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
 - 나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 3 조의 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 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
 - 라.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 - 마. 공직자등의 배우자
 - 바. 외국 공무원 등
 - A. 외국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- B. 외국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
 - C.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
 - D.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
 - E.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사. 외부 기관단체 기업체 협의회 등

아. NGO(지역 환경단체) 등

자. 기타 위에 준하는 자

2. "금품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
나. 음식물 · 주류 · 골프 등의 접대 · 향응 또는 교통 · 숙박 등의 편의 제공

다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· 무형의 경제적 이익

3. "청탁금지법"이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말한다.

4. "특정금융정보법"이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말한다.

5. "자금세탁행위"란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5 호에서 정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

가.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 3 조에 따른 범죄행위

나.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 7 조에 따른 범죄행위

다.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 3 조, 「관세법」 제 270 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102 조 또는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 8 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(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·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(假裝)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

6. "자금세탁방지제도"란 국내 ·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· 예방하기 위한 법적 ·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, 금융제도,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.

7. "윤리담당부서"란 당사 윤리경영담당 임직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.

제 3 조 [적용범위]

본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기타 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, 이하 "임직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4 조 [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]

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국내 및 거래당사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, 상기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.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.

제 5 조 [부정청탁의 금지]

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,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업무의 위법 처리,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·면제에 개입,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 개입, 입찰·경매·개발·시험·특허·군사·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등 청탁금지법 제 5 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 [금품등의 제공 금지]

- ①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등도 직·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공, 약속 또는 제안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7 조 [금품등 제공의 허용범위]

제 6 조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예외적으로 제 1 호의 금품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- 1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, 1 회에 제공되는 가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[별표 1] 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인 금품등

구 분	상한액	비 고
음식물	3 만원	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
경조사비 (축의금·조의금)	5 만원	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 만원

선 물	5 만 원	<p>금전, 유가증권(상품권은 제외), 음식물, 경조사비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, 상품권(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)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.</p> <p>단,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)은 15 만 원</p> <p>(설날·추석 전 24 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 일까지는 30 만 원)</p>
-----	-------	--

2. 임직원은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등의 제공 허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제공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윤리담당부서에 질의할 수 있다.

제 8 조 [개인적인 금품등 제공]

회사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9 조 [이권개입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]

-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·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 10 조 [자금세탁 금지]

임직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자금세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11 조 [급행료 금지]

임직원은 신속한 사무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공직자등에게 급행료 명목의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12 조 [제 3 자 관리]

회사는 파트너사 등에 대한 반부패/윤리경영 리스크 현황파악 및 이슈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

적 점검 등 제 3 자 관리에 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[신고 및 보고 의무]

- ① 본 규정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, 임직원은 즉시 이를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윤리담당부서는 해당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, 신고내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[규정 준수 관리]

회사는 임직원이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슈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[징계 및 책임]

- ①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,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,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, 기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없다.

제 16 조 [법령의 준용]

본 규정 외 사항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»,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»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등을 따른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

제 2 조 [경과조치]

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

제 3 조 [관련사규]

문서번호	사규명
R-70-HF-01	내부감사규정
R-70-HF-02	윤리행동강령
R-60-GA-01	인사규정